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10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21. 5.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5. 24. 접수 제8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21. 5.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5. 24. 접수 제8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94550호로 D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4. ‘D은 원고에게 23,365,609원 및 그 중 6,031,36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29.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부(父) E의 소유였는데, E는 2004. 6.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F, E와 F 부부 슬하의 자녀들인 G, D, 피고 B, H, I, J, 피고 C이 있었다.
- 2) F은 2021. 4. 7.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이 F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이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G, D, H, I, J는 F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지분은 2/17이다.
- 3) G, D, 피고 B, H, I, J, 피고 C은 2021. 5.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5. 24. 접수

제83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1)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장안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D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즉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17 지분(= D의 상속지분 $2/17 \times$ 피고들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68 지분(= D의 상속지분 $2/17 \times$ 피고들의 각 지분 $1/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별지]

1. 경북 의성군 K 답 423㎡
2. 경북 의성군 L 답 1,567㎡
3. 경북 의성군 M 임야 2,350㎡
4. 경북 의성군 N 임야 10,711㎡
5. 경북 의성군 O 임야 89,653㎡. 끝.

1) 즉, 망 E의 단독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 E가 1/4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